

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3. 5. 3 선고 2022나1267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트너

담당변호사 심정구

피고,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시그니처

담당변호사 고상현

변 론 종 결 2023. 4. 12.

판 결 선 고 2023. 5. 3.

제1 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. 5. 17. 선고 2020가합6270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. 7. 24. 접수 제425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 쓰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 제6면 제1~2행의 “소유권이전등기는”과 “C이” 사이에 “등기원인에 관한 추정력이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고,”를 추가한다.

○ 제1심 판결 제12면 제5행의 “부동산등기부에”부터 제8행 “참조).”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(대법원 2002. 2. 5.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),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,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, 이러한 경우에도 이를 다투는 측에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·입증을 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5. 9. 29.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).』

○ 제1심 판결 제13면 제2행의 “보인다.”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보이는바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‘매매’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복멸된다고 볼 수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견중철, 판사 이형원, 판사 김은경